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93 호 2023. 3. 3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61회[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47회[20222023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 공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70회[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74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4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75회[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4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노선)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577	15~20	260	
중로	3	474	11	76	
소로	2	669	8	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무궁화신탭 대표이사 권준명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5. 06. 30.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천동	203-3	전	1302.0	130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	신천동	203-40	창	255.3	255.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	신천동	203-8	도	99.0	61.0	울산광역시 북구					
4	신천동	203-9	도	37.3	37.3	울산광역시 북구					
5	신천동	203-10	도	54.0	54.0	울산광역시 북구					
6	신천동	203-11	도	30.1	30.1	울산광역시 북구					
7	신천동	203-12	도	23.3	23.3	울산광역시 북구					
8	신천동	203-13	도	17.3	17.3	울산광역시 북구					
9	신천동	203-14	도	86.3	86.3	울산광역시 북구					
10	신천동	203-41	대	132.7	13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1	신천동	203-30	대	261.9	26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2	신천동	203-31	전	31.2	31.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3	신천동	203-32	전	54.0	5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4	신천동	203-33	대	49.4	49.4	울산광역시 북구					
15	신천동	203-42	전	180.0	18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6	신천동	203-35	도	39.0	3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7	신천동	203-36	전	4.7	4.7	울산광역시 북구					
18	신천동	203-37	전	31.3	3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9	신천동	227	전	1906.5	33.0	김○권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00-3 새운파래스타운 3동 000호	이○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6-3 새운파래스타운 0동 000호		
20	신천동	229-2	전	691.0	4.0	고○림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45, 유곡동 에일린의 풀 3차 000동 1000호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신천동	229-3	전	826.9	212.0	고○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2	근저당권	
22	신천동	229-7	전	245.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3	신천동	229-8	전	194.0	181.0	고○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2차 ○○○동 1○○○호	○○○○신용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근저당권	
24	신천동	477-18	대	109.9	10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5	신천동	477-19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26	신천동	477-20	전	206.2	20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7	신천동	477-5	전	219.5	50.0	권○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				
28	신천동	477-6	도	39.8	39.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9	신천동	477-7	도	114.1	114.1	울산광역시 북구					
30	신천동	477-9	전	280.7	188.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1	신천동	477-10	대	307.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2	신천동	477-11	대	557.0	37.0	관선○○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	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도곡동 타월팰리스아파트 비동 ○○○호	대표자 변경	
33	신천동	477-21	대	41.7	4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4	신천동	477-14	도	100.7	100.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5	신천동	478-1	전	60.0	6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6	신천동	478-5	대	231.0	23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7	신천동	478-16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38	신천동	478-17	전	2.0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9	신천동	478-18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0	신천동	478-19	대	35.0	20.0	울산광역시					
41	신천동	478-20	대	43.0	4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2	신천동	478-11	대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3	신천동	478-21	도	146.0	69.0	울산광역시					
44	신천동	481-5	도	201.0	16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5	신천동	481-17	도	103.0	11.0	울산광역시 북구					
46	신천동	759-32	도	1,760.9	607.5	국 (국토교통부)					
47	신천동	759-33	도	122.9	16.5	국 (국토교통부)					
48	신천동	759-26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49	신천동	759-27	도	230.0	3.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1,602.1	5,812.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447호

2022/2023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22/2023년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2023. 4. 26.(수)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

구 분	면허종류	어업·양식업 의 종류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면적 (ha)	수면위치	승인조건
대체 개발	정치망	대형 정치망	수산동물	15.9506	정자동 지선	승인

2. 승인조건

가.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 시 수산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어업면허를 처분하지 아니 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양식업 면허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2) 어장·면허양식장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 3) 개발되는 어장 및 면허양식장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4) 양식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이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상은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물에 한함

3. 신청기간 : 2023. 3. 24. ~ 4. 26.

4.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5. 제출서류

- 가. 어업·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 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 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 라.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470호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2년도에는 태풍 2회(힌남노, 난마돌), 호우특보 3회, 폭염특보 44일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고 피해는 309건이며, 공공시설 19개소 중 14개소 복구가 완료되었고 5개소의 재해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6개 부서 147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이 감소 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자동강우량기 4대, 자동우량경보시설 4대, 지진해일 예·경보 시설 8대, 재해문자전광판 6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756백만원으로 756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위 적립액은 최근 5년 평균 624백만원 보다 13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4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724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사용액 1,034백만원에 비해 310백만원 줄어든 수치이며, 5년 평균 784백만원에 비하여 60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A등급으로 안전등급이며, 2021년 진단 미 실시하였고 2020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A등급으로 유지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한파, 폭염, 풍수해 등 총 2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공공건축물 56개소 중 45개소(80.3%), 도로시설물 63개소 중 58개소(92%), 여항시설 11개소 중 11개소(100%)가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87.7%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앞으로 울산광역시 복구는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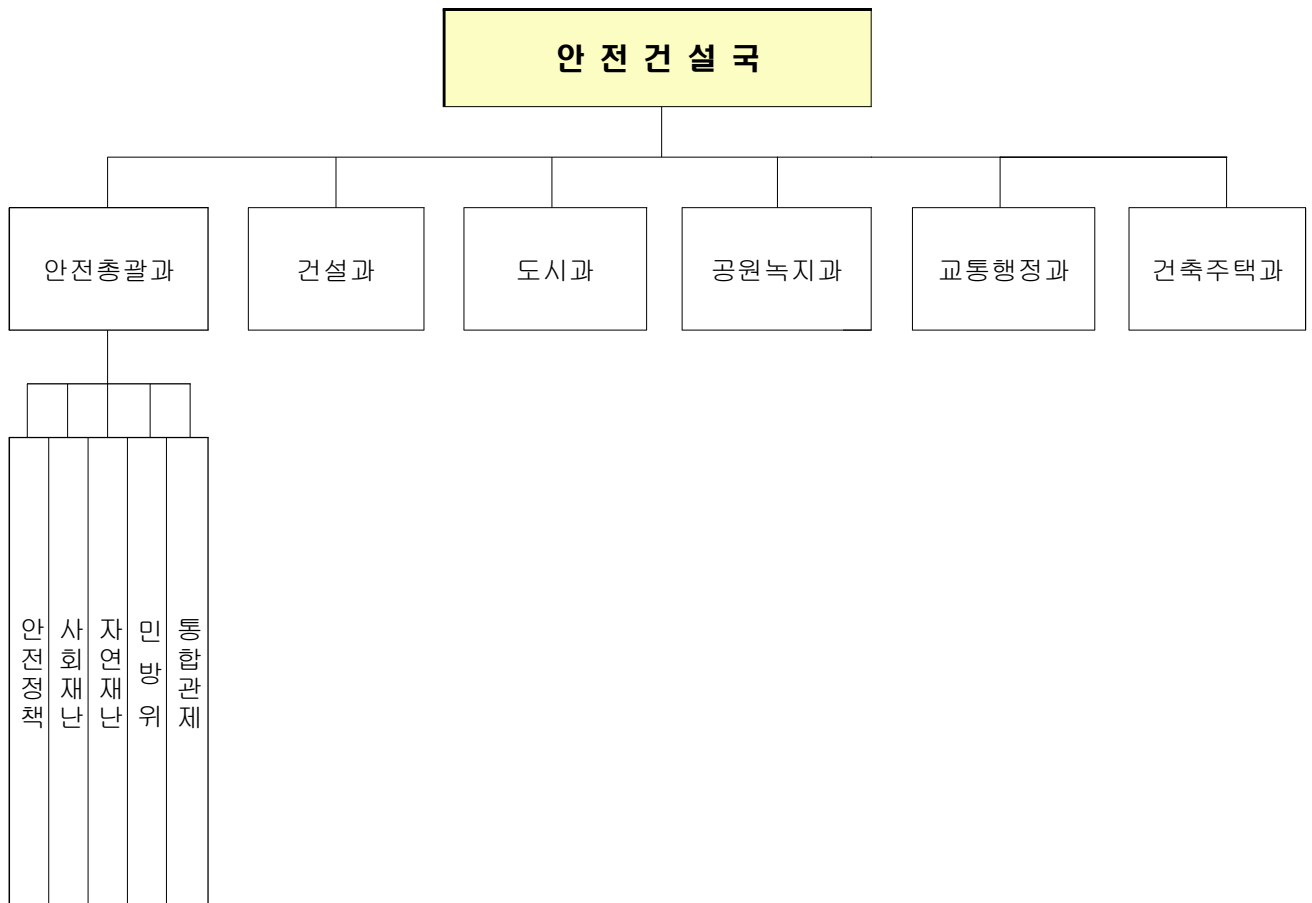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9. 6.	제11·14호 태풍 힌남노·난마돌	-공공시설 19건 -사유시설 290건	복구 진행 중 (재난지원금 148,500천원 지급)	공공시설 19개소 중 14개소 복구 완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53	129	1	6	30	46	35	11	24
	현원	147	123	1	6	32	41	26	17	24
안 전 총괄과	정원	23	20	1	1	6	6	6	0	3
	현원	23	20	1	1	6	6	4	2	3
건설과	정원	37	27	0	1	5	8	9	4	10
	현원	34	24	0	1	6	7	7	3	10
도시과	정원	26	23	0	1	7	9	5	1	3
	현원	26	23	0	1	7	7	3	5	3
공 원 녹지과	정원	23	19	0	1	4	7	3	4	4
	현원	22	18	0	1	5	6	3	3	4
교 통 행정과	정원	19	17	0	1	3	7	5	1	2
	현원	19	17	0	1	3	7	5	1	2
건 축 주택과	정원	25	23	0	1	5	9	7	1	2
	현원	23	21	0	1	5	8	4	3	2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2				1	1	
	현원	1	1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22	122	133	139	123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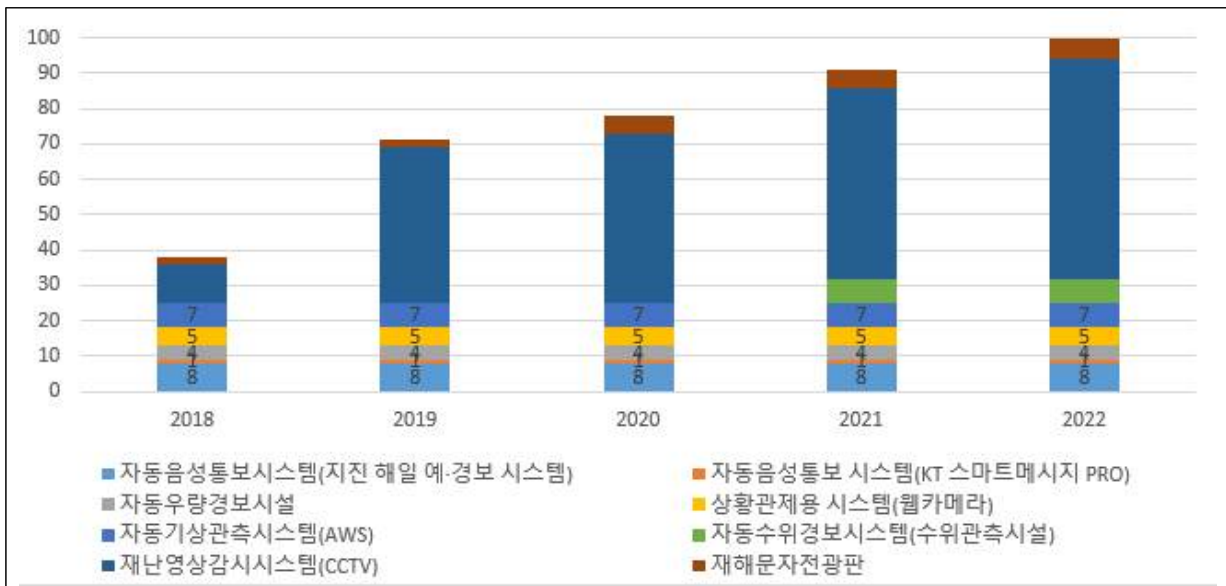
- '22.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업무가 미디어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12명) 감소됨.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	정자동 638-27 외 7개소
자동음성통보 시스템(KT 스마트메시지 PRO)	1	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4	대안동 산 208-1 외 3개소
상황관제용 시스템(웹카메라)	5	효문배수장 외 4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7	문화예술회관 외 6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7	염포동 508-1번지 외 6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2	산업로 1010 외 6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6	중산동 743-6 외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7	무룡로 1096 외 16개소
위성전화기	2	안전총괄과 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음성통보시스템(지진 해일 예·경보 시스템)	8	8	8	8	8
자동음성통보 시스템(KT 스마트메시지 PRO)	1	1	1	1	1
자동우량경보시설	4	4	4	4	4
상황관제용 시스템(웹카메라)	5	5	5	5	5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7	7	7	7	7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0	0	0	7	7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1	44	48	54	62
재해문자전광판	2	2	5	5	6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6	16	17	17	17
위성전화기	2	2	2	2	2



- 지난해보다 재난영상감시시스템 8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증가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2022년 5월 방사능방재요원 법정교육	1일	원자력안전기술원	2	
2022년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일	울산광역시	23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컨설팅 교육	1일	행정안전부	1	
재난상황보고훈련 개선 교육	1일	복구청	3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1일	복구청	48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1일	한국면진제진협회	1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과정	2일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구호과정	1일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1일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3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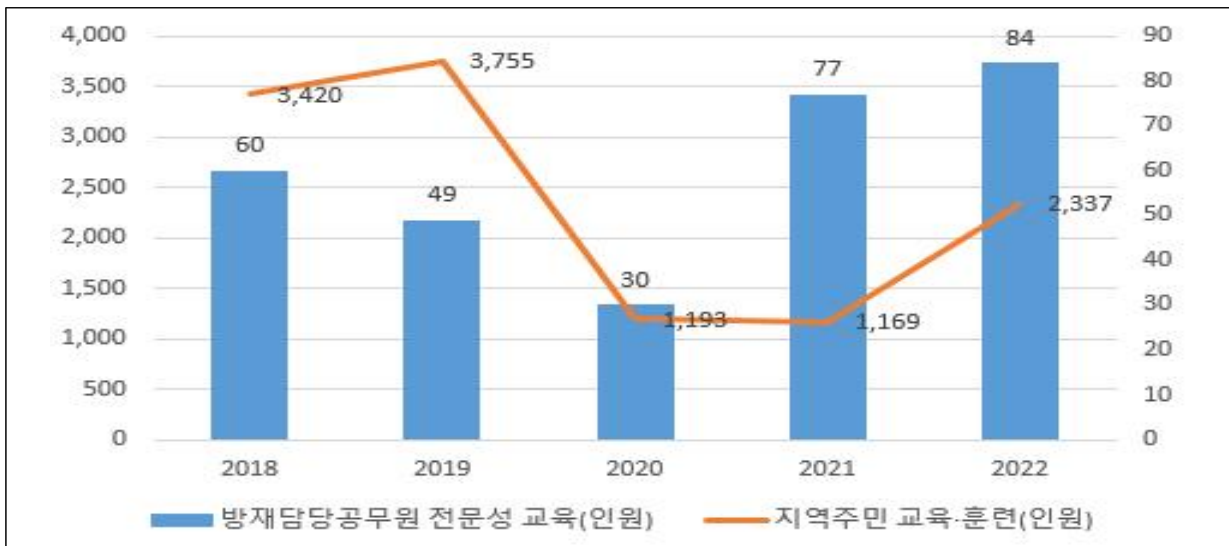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양수기 가동 훈련	2022. 6. 7. ~ 6. 13.	동별 행정복지센터	73	양수기 가동방법 교육	복구청
방사능방재교육	2022. 6. 8.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30	방사능방재교육	복구청
재난안전교육	2022. 9. 30.	전북119안전 체험관	77	재난안전교육	복구청
지진안전교육	2022. 10. 19. ~ 10. 26.	울산안전 체험관	32	지진안전교육	복구청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22년 지진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2022. 10. 18 ~ 10. 28.	울산 안전 체험관	144	진도 및 여진 체험을 통한 지진 발생 시 대피 훈련	북구청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2022. 4. ~ 11.	어린이집 등	1,355	감염병 예방, 화재, 지진 등 재난 대응 기본 요령	북구청	
안전취약계층 시민생활안전 교육	2022. 4. ~ 6.	어린이집 등	700	놀이터 안전, 지진, 태풍 등 재난대응 기본요령	북구청	
2022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	2022. 6. ~ 7.	동 행정복지 센터	138	방사능 비상 시 주민 행동요령	북구청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60명	49명	30명	77명	84명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420명	3,755명	1,193명	1,169명	2,337명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육·훈련 참석인원 증가와 찾아가는 방재교육 등 구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인한 지역주민 참여 인원 작년대비 1,168명 증가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28	415	408	-	7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신문고 활성화 홍보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홍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22. 4. 19.	화봉시장 앞	16	
2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신문고 활성화 홍보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홍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22. 7. 13.	송정네거리 일원	19	
3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예방 홍보물 배부 코로나-19감염병 방역 관련 홍보물 배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및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홍보 	22. 8. 5.	강동중앙 공원 (제4공원)	8	
4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안전디딤돌 관련 안내 캠페인 홍보물 배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홍보 	22. 9. 22.	화봉사거리 일원	13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울산 복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금액 상향	구민 재난과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보험 보장 확대	2022. 1. 13.	뉴시스	
2	울산 복구,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시행	구민 재난과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보험 보장 확대	2022. 1. 13.	울산매일신문	
3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안저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북구 공단 사업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2022. 2. 9.	울산매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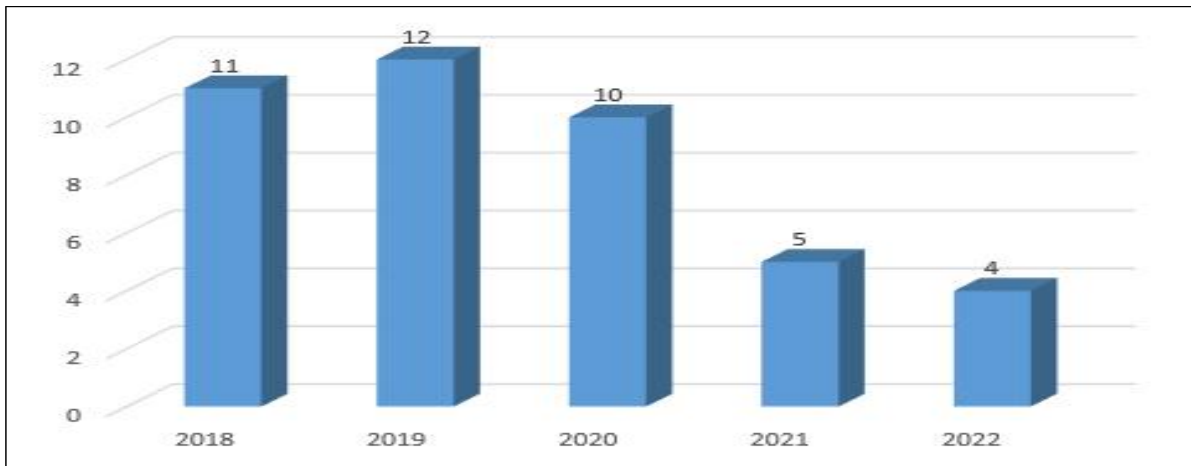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4	울산 북구 주요 하천구역 5곳 자동차단시설 설치	주요 하천구역에 자동차단시설 설치하여 침수 등 자연재난 피해 사전예방	2022. 3. 15.	경상일보	
5	울산 북구, 울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재난안전교육 업무협약	재난안전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실시	2022. 3. 15.	울산 매일신문	
6	울산 북구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업무협약	재난안전교육 업무협약	2022. 3. 16.	울산제일일보	
7	울산 송정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활동	송정동 자율방재단 저지대 및 침수우려지역 예찰 및 우수반이 청소 활동 실시	2022. 5. 8.	울산제일일보	
8	울산 강동동 자율방재단 재해대비 예찰활동	강동동 자율방재단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지역 점검 활동	2022. 5. 11.	울산제일일보	
9	울산 북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도상 훈련 실시	도상 훈련 실시하여 초기대응 태세 점검	2022. 5. 18.	울산매일신문	
10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름철 자연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고 대비 이론 및 실습교육 실시	2022. 5. 19.	울산매일신문	
11	울산 북구, 양수기 사전점검 등 부서별 대책 논의	가뭄 피해 대비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 대한 가용 자원 확보 검토	2022. 5. 28.	매일안전신문	
12	북구, 여름철 그늘막 10개 추가 설치 등	무더위 대비 그늘막 추가 설치	2022. 5. 30.	뉴시스	
13	울산 북구, 재난 대책 상황실 운영, 가뭄피해 예방·대응 나서	가뭄피해 재난 대책 상황실 운영, 가뭄피해 예방에 대응 중	2022. 5. 30.	울산매일신문	
14	울산 북구 자율방재단, 우수관로 정비	강동동 일원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우수관로 저비 등 환경정화활동 실시	2022. 6. 10.	울산제일일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5	복구,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지원 등	재택, 비닐하우스, 상가 등에 대해 자연재난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	2022. 6. 16.	메트로신문	
16	울산 복구청장, 하천 정비공사 현장 점검	매곡천 재해재난 대비 하천정비공사 준공 현장 점검	2022. 6. 16.	울산제일일보	
17	울산 복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통장회·자율방재단 우수받이 정비 활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우수받이 정비활동	2022. 7. 14.	경상일보	
18	울산 복구자원봉사센터, 통합지원단 교육	울산 복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교육 및 간담회	2022. 7. 28.	울산제일일보	
19	박천동 울산 복구청장, 울산안전체험관 현장체험 방문	울산안전체험관 방문, 각종 재난상황 체험	2022. 8. 9.	울산매일신문	
20	울산 복구, 무더위 심터 134곳 운영실태 점검	무더위 심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2022. 8. 10.	울산매일신문	
21	울산 복구의회, 지난 18일 태풍 난마돌 대응 상황 확인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 및 피해우려현장 확인	2022. 9. 19.	울산제일일보	
22	울산 복구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재난안전교육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안전교육 실시	2022. 10. 3.	울산제일일보	
23	울산 복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울산 복구 지역 상습침수선사업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22. 10. 13.	울산매일신문	
24	울산 복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 실시	박천동 구청장 주재,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토론 실시	2022. 11. 15.	울산매일신문	
25	울산 복구,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관리책임기관 간담회 개최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책임기관 간담회 개최	2022. 11. 24.	울산매일신문	
26	울산 복구, 2022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추진실적과 내년 계획 공유 및 재난 대처방안 공유	2022. 11. 29.	울산제일일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27	울산 복구자율방재단, 폭설 대비 모래주머니 만들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2022. 12. 04.	울산제일일보	
28	울산 복구, 명촌천 산책로 조성 등 정비사업 추진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예방을 위해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2022. 12. 04.	울산매일신문	
29	복구, 매곡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 설치	겨울철 도로결빙, 폭설 대비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 설치	2022. 12. 05.	울산제일일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장홍보실적(횟수)	11	12	10	5	4



- 2021년 대비 현장홍보 실적이 다소 줄었으나, SNS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각종 재난예방 점검 및 대응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임.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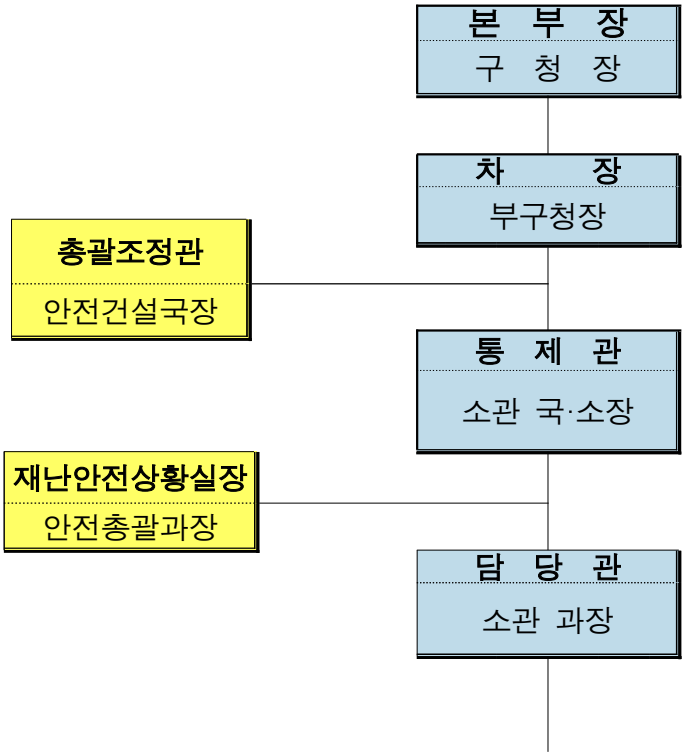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청장 • 위원 :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상황 관리 총괄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재난 현장 환경 정비	긴급 통신 지원	시 설 응급복구	에 너 지 기능복구	재난 수습 홍보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교통 대책	의료 · 방역	자원 봉사 관리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 구급
안전총괄과	복지 정책과	자원 순환과	안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경제 일자리과	기획 예산과	안전 총괄과	교통 행정과	보건소	복지 정책과	안전 총괄과	안전 총괄과
총무과	대한 적십자사		KT 울산 지사	복구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전울산 지사 가스안전 공사	울산강북 교육지원청 육군 7765부대 2대대 북부 경찰서	북부 경찰서		자원 봉사 센터	북부 경찰서		북부 소방서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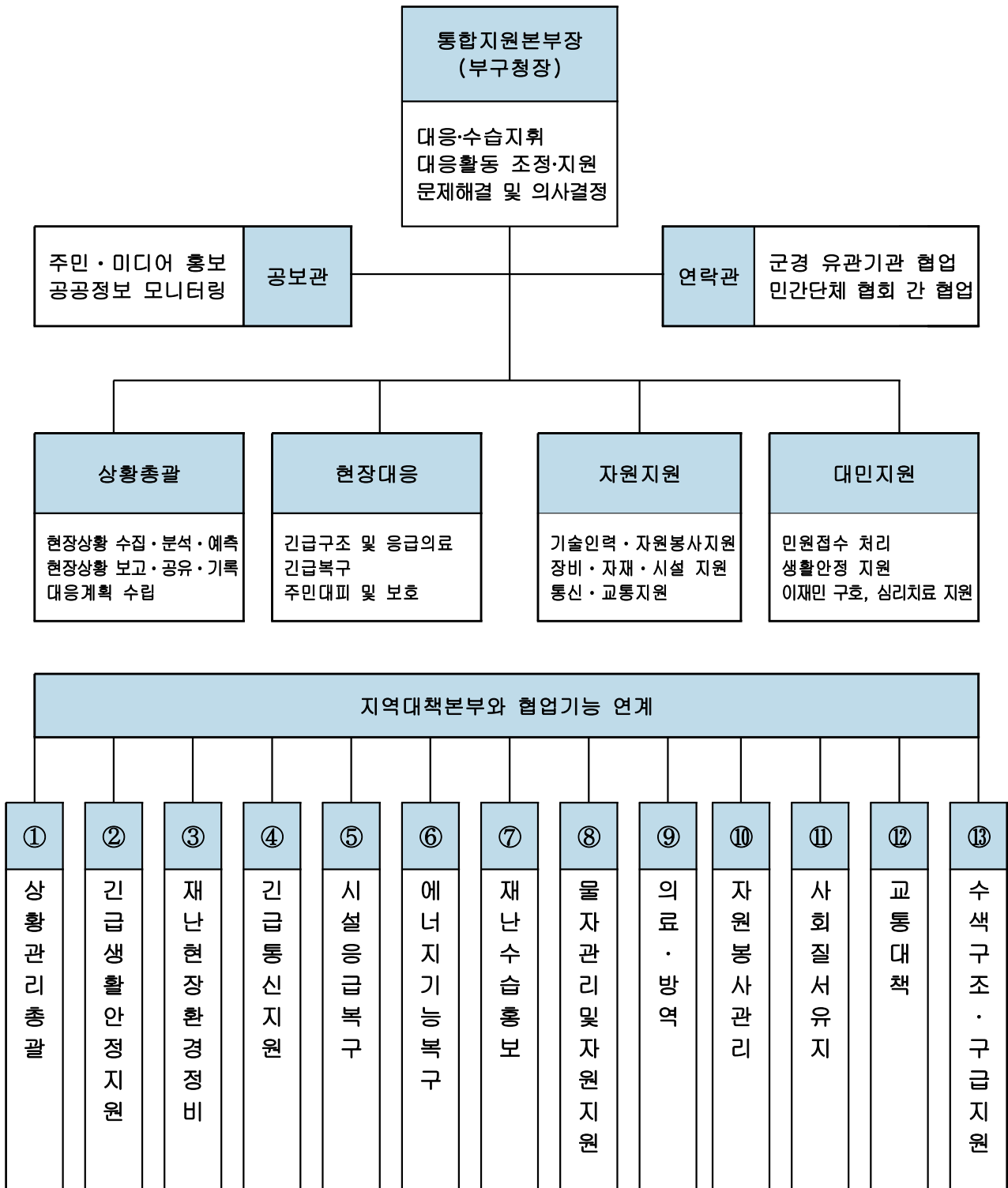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정책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안전총괄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안전총괄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일자리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예산과)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안전총괄과)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총괄과)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풍수해 현장행동 매뉴얼]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조직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구조·구급을 제외한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 총괄 지휘 - 상급기관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주민소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여론 수집 및 민심동향, 민원사항 처리 - 직원 비상소집 및 복무관리, 합동분향소 설치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지원반 구성·운영 / 재난대응 공보 전담팀 가동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및 붕괴 잔해물 철거작업 일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수거처리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이동 조치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견인 및 관리
복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사상자 조치(환자분류 ⇒ 응급처치 ⇒ 후송치료)
복부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통합·조정
복부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
육군 7765부대 2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로 인한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
한국전력공사 울산부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설비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KT울산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시설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울산복구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 긴급자원봉사단 구성(모집)·운영 -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휘 하에 분야별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관리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 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자 긴급구호 봉사활동 - 긴급구조간 지원활동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전 지원활동 전개 - 심리안전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1.1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울산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1.1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울산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04.12.13.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울산북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03.2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구성 및 활동지원, 교육, 훈련 등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07.1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03.05.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014.04.2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지휘 통합대응 체계	2014.04.25.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2014.04.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2016.12.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7.09.2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7.12.14.	
안전도시 조례	▪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12.27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	▪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09.11.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09.11.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20.12.2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 규정	2021.03.04.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2.11.03.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 지원	2022.12.29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교통 수송	울산공항	여객터미널 : 8,886㎡ 활주로 : 2,000 X45m 계류장 : 33,605㎡ 주차장 : 26,860㎡ 항행안전시설 : CAT-I	한국공항 공사 울산지사	1984.07.05. (대통령령 제1460호)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태화강 제방 정밀안전점검용역	태화강	정밀안전점검용역	'22. 5. 17. ~ '22. 6. 30.	13	시특법 대상시설물 점검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북구 관내	시레잠수교 등 24개 도로시설물	'22. 5. 18. ~ '22. 6. 30.	73	
2022년 하반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북구 관내	시레잠수교 등 24개 도로시설물	'22. 9. 5. ~ '22. 12. 2.	72	
명촌배수문 보수보강 공사	명촌동 433-48번지	명촌배수문 보수보강 1식	'22. 6. 29. ~ '22. 7. 27.	9	배수장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명촌동 433-48번지	정밀안전진단 1식	'22. 7. 13. ~ '22. 8. 11.	30	
명촌배수장 배수암거 보수공사	명촌동 433-24번지	배수암거 보수공사	'22. 10. 27. ~ '23. 1. 24.	117	
무룡천 제방 피해복구공사	무룡천	제방정비 1식	'22. 3. 14. ~ '22. 4. 11.	34	하천정비
정자천 제방 피해복구공사	정자천	제방정비 1식	'22. 4. 14. ~ '22. 5. 4.	18	
매곡천 제방 복구공사	매곡천	제방정비 1식	'22. 5. 2. ~ '22. 6. 15.	48	
당사동 345번지 일원(당사천) 정비공사	당사천	석축정비 1식	'22. 8. 24. ~ '22. 12. 26.	70	
신명천(상류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신명천	하천정비 1식	'22. 11. 14. ~ '22. 12. 12.	19	
자동영수 분사장치 구입	매곡동 산5-1번지	L=1.6km	'22. 12. 9. ~ '22. 12. 29.	278	제설시설
영포로 상습침수	영포로 238-6	PC암거, 파형강관	'22. 4. 18. ~	171	상습침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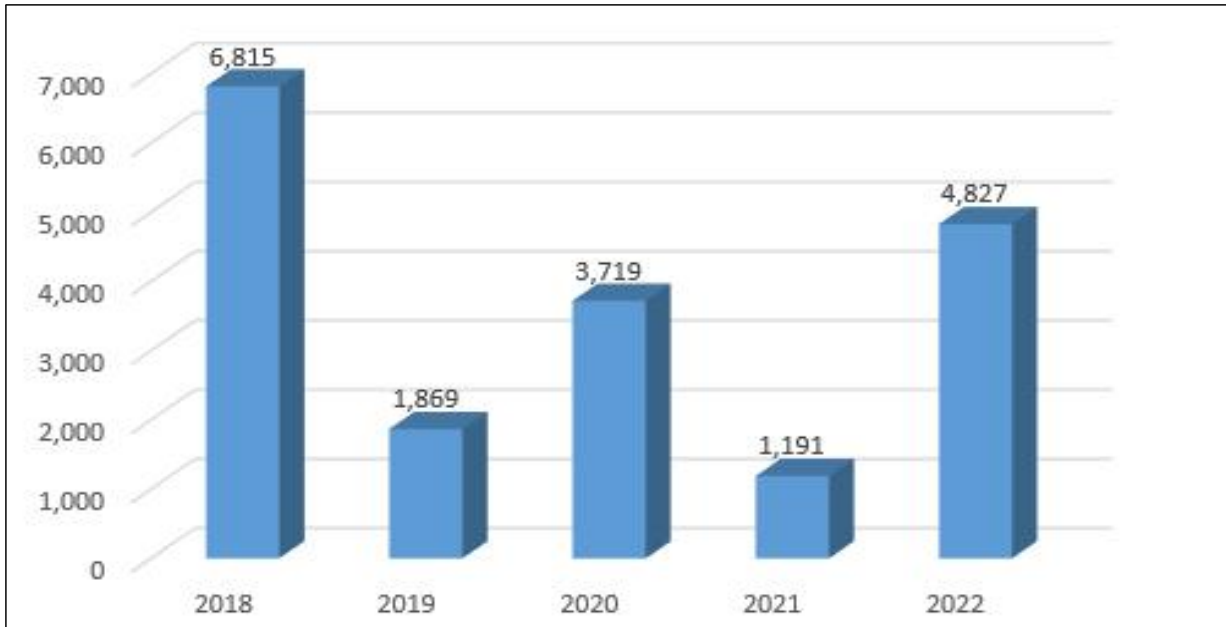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개선사업(효문공단)	일원	부설	'23. 4. 20.		선	
염포119 안전센터 주변 침수개선사업	염포동 507-12번지 일원	우수관 부설, 측구수로관 설치, 집 수정 설치	'22. 4. 25. ~ '22. 7. 23.	35		
강동농협 주변(동해안로) 상습 침수개선사업	정자동 184-1번지 일원	우수관 부설	'22. 4. 25. ~ '22. 7. 23.	41		
염포로(양정동구 간) 침수개선사업	효문동 1051, 염포로 일원	우수관로 부설	'22. 5. 12. ~ '22. 11. 30	44		
양정동 상습침수 개선사업	양정동 483-1번지 일원	우수관 부설	'22. 6. 30. ~ '22. 10. 27.	182		
약수4길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약수4길 9-2번지, 약수6길 4-6번지	우수관부설, 토사측구정비	'22. 9. 15. ~ '22. 10. 13.	10		
동해안로(정자로 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북구 동해안로 1441(정자로터리 일원)	우수관 부설,사각수로관 설치	'22. 11. 14. ~ '23. 2. 11.	162		
명촌배수장 배수암거 보수공사	명촌동 433-24번지 일원	콘크리트 염해 및 중성화 표면처리	'22. 10. 27. ~ '23. 1. 24.	117		배수암거 유지관리
명촌배수장 배수암거 준설공사	명촌동 433-37번지 일원	배수암거 준설	'22. 11. 8. ~ '23. 1. 6.	77		
효문공단 내 하수관로 부설공사(2차)	효문동 820번지, 644-2번지 일원	오수관로 신설	'22. 3. 14. ~ '22. 8. 30.	134		오수분산으로 하수관로 장기 유지
화봉지구 오수관로 확장공사	화봉동 957-12번지 일원	오수관로 신설, 맨홀설치 3개소	'22. 4. 21. ~ '22. 11. 22.	203		
달천농공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	달천동 207-7번지 일원	우수관 부설	'22. 6. 22. ~ '22. 9. 10.	141	재난재해 긴급복구	
달천농공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2차)	달천동 225번지 일원	우수관 부설	'22. 10. 5. ~ '23. 1. 2.	207	재난재해 대비	
태풍 힌남노 (매곡동917-1번지) 수해복구공사	매곡동917-1번지	도로 복구 1식	'22. 12. 1. ~ '23. 1. 9.	38	도로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태풍 힌남노 (대안동1059-1번지) 수해복구공사	대안동1059-1번지	도로 복구 1식	'22. 12. 2. ~ '23. 1. 10.	31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달천 농공단지 일원)	달천동 산151	산지사방 2.0ha	'22. 4. 29. ~ '22. 6. 23.	116	사방사업
2022년 계류보전사업 (천곡임도 일원 외 2개소)	천곡동 산119-1	계류보전 1km	'22. 4. 25. ~ '22. 6. 30.	160	
2022년 사방댐의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편백산림욕장 일원)	달천동 산174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22. 5. 3. ~ '22. 6. 29.	283	
2022년 사방댐의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연암소류지 일원)	연암동 산53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22. 5. 12. ~ '22. 7. 4.	358	
2022년 사방댐의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염포운동장 일원)	염포동 산116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22. 5. 2. ~ '22. 7. 4.	341	
오치골 공원 일원 사방댐 준설사업	양정동 산 63	사방댐 준설 1개소	'22. 6. 9. ~ '22. 6. 24.	33	
2022년 하반기 사방사업(매곡 3산단 일원)	매곡동 산163	큰돌찰쌓기 55.3㎡, 큰돌찰붙이기 30㎡ 등	'22. 12. 6. ~ '22. 12. 25.	24	
2022년 하반기 사방사업(낙서암 일원 외 2개소)	대안동 산204	큰돌찰쌓기 21.9㎡, 스크리설치 3개소, 가비온설치 25㎡ 등	'22. 11. 24. ~ '22. 12. 20.	22	
2022년 하반기 사방사업(단디마을 일원)	천곡동 산877-1	큰돌골막이 1개소, 큰돌찰쌓기 34.5㎡, 큰돌찰붙이기 10㎡ 등	'22. 12. 5. ~ '22. 12. 23.	36	
2022년 하반기 사방사업(삼봉사 일원)	중산동 산2-3	큰돌찰쌓기 62.6㎡, 큰돌찰붙이기 30㎡ 등	'22. 12. 5. ~ '22. 12. 23.	2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6,815	1,869	3,719	1,191	4,827



- 그늘막 설치, 하천 보수 예산 확보 등 작년 대비 재난방지시설 예산 확보량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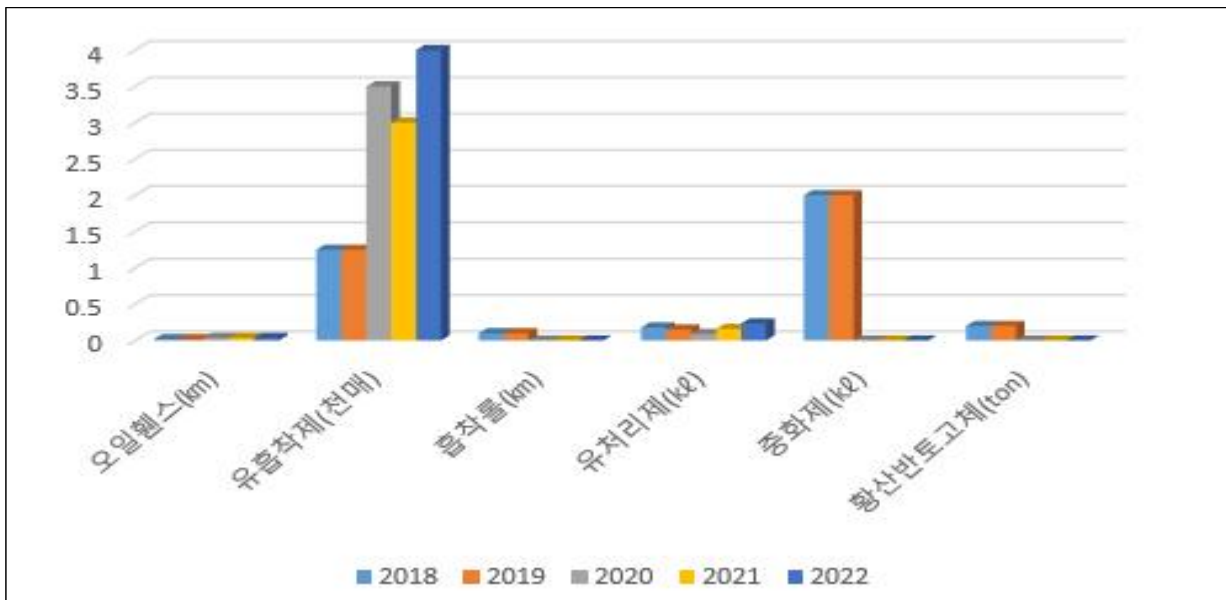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중화제	황산반토고체
	km	천매	km	kl	kl	ton
총계	0.035	4	0	0.234	0	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오일웬스(km)	0.018	0.018	0.035	0.035	0.035
유흡착제(천매)	1.25	1.25	3.5	3	4
흡착물(km)	0.1	0.1	0	0	0
유처리제(kℓ)	0.18	0.15	0.09	0.16	0.234
중화제(kℓ)	2	2	0	0	0
황산반토고체(ton)	0.2	0.2	0	0	0



- 방제장비의 노후화 및 소모성 재료로 증감요인 발생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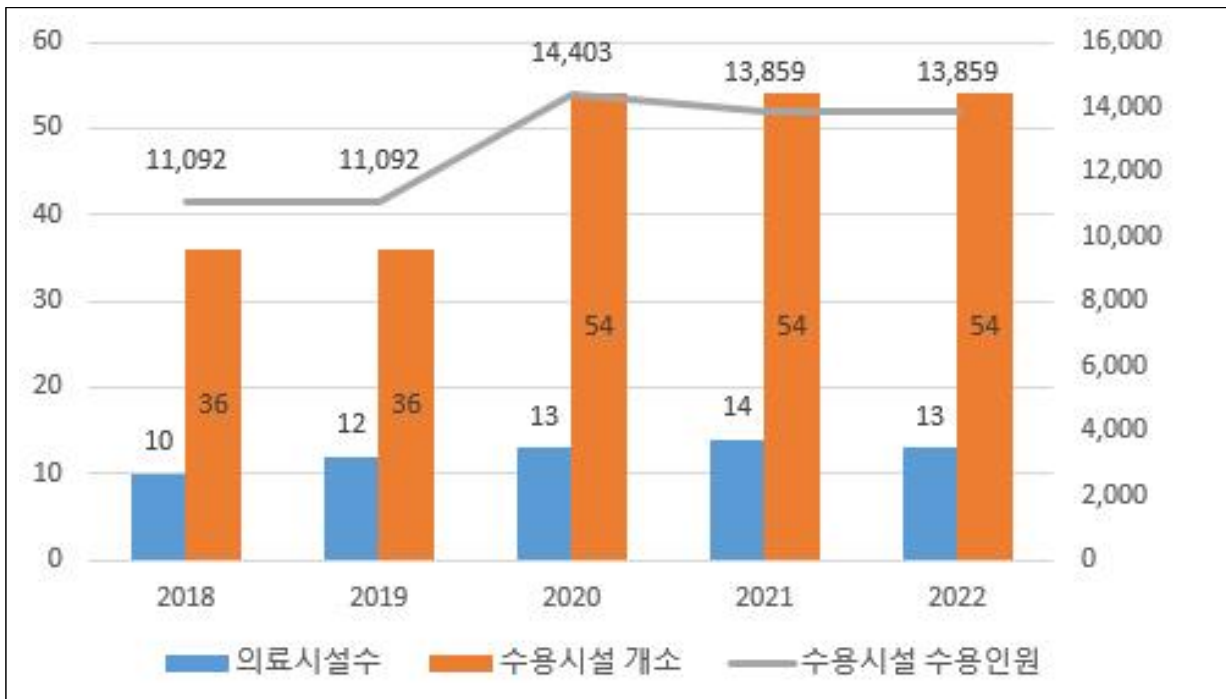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3	95	430	4	1585	1
병 원	12	93	390	3	1585	1
보건소	1	2	40	1	0	0
기 타	-	-	-	-	-	-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54	13,859	33	10,760	-	-	8	323	13	2,776	-	-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료시설수		10	12	13	14	13
수용시설	개소	36	36	54	54	54
	수용인원	11,092	11,092	14,403	13,859	13,859



- 폐업으로 인한 의료시설 1개소 감소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인력 지원이 있었으나, 2022년 종료되어 2021년 대비 3명 감소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교류아크 용접기	구급차	특수용도 트레일러	천공기	소형보트
총계	4	0	1	1	2	0	0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엔진 펌프	수중 펌프	모래 살포기	덤프	크레인 트럭	청소차	고소 작업차	전기톱
총계	113	0	52	3	20	5	1	25	1	6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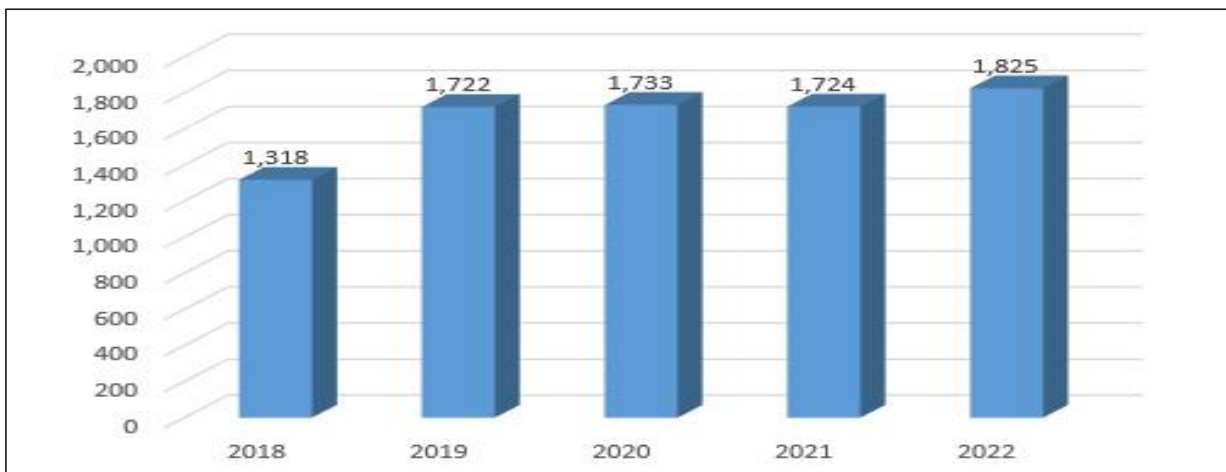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랜턴 (개)	등짐 펌프 (개)	간이 수조 (개)	갈퀴리 (개)	기타 (톱, 낫)
총계	1,825	1	4	204	693	4	860	59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서	양수기	화학차	천공기	착암기	가스복구 차량	기타
총계	96	0	0	44	0	0	0	1	4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불진화장비	1,318	1,722	1,733	1,724	1,825



- 노후화로 인한 청소차 1대, 양수기 4대 불용처리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기계	토목	원자력	안전	전기	산업응용	통신	항공	조선	항공
인원	1,346	129	0	401	96	486	30	10	181	9	4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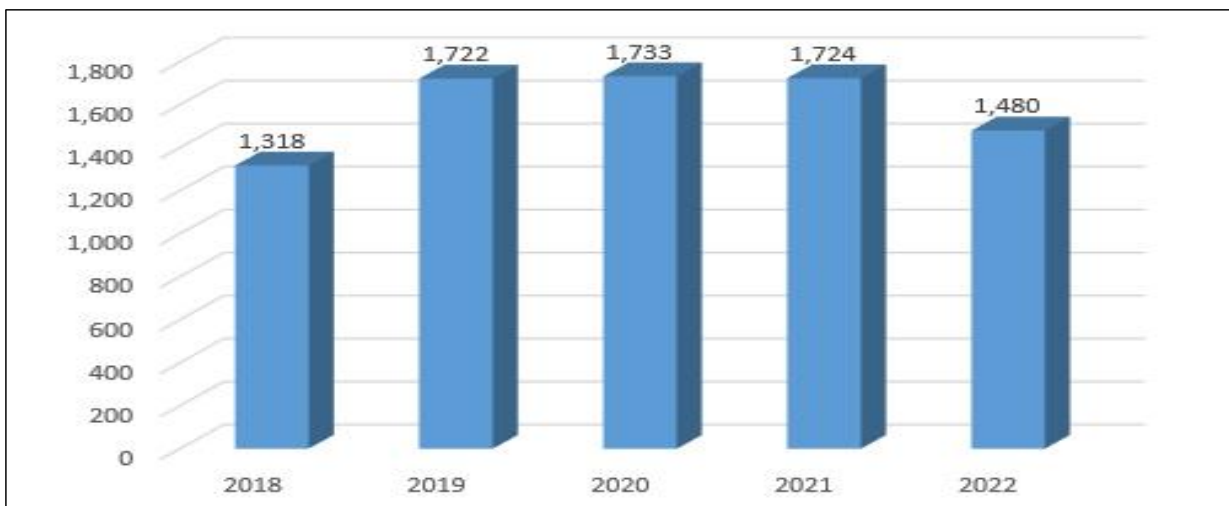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가스공	조리	용접공	건축공
인원	986	15	29	103	186	4	-	649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공수특동지회	지역방재단	자율방범연합회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1,480	267	20	210	12	0	250	418	33	50	220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318	1,722	1,733	1,724	1,480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현행화에 따라 인원 다소 감소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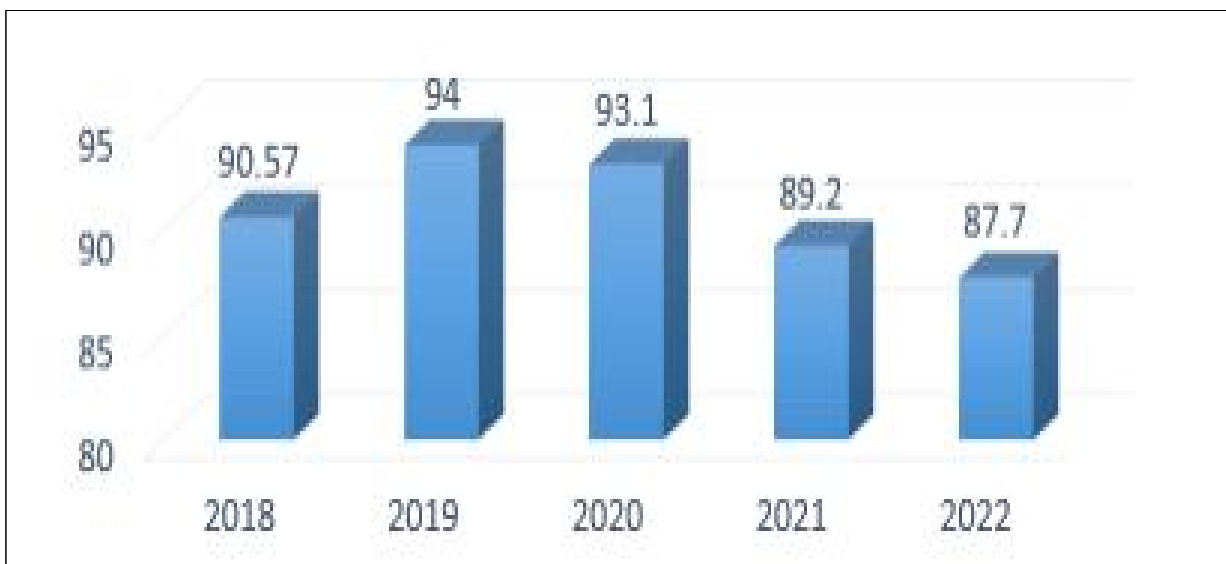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22 재난관리평가	2022. 7. 7.	행정안전부	미흡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물	56	45	2	230	80.3
도로시설물	63	58	0	0	92.0
어항시설	11	11	0	0	100
계	130	114	0	0	87.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내진율	90.57%	94%	93.1%	89.2%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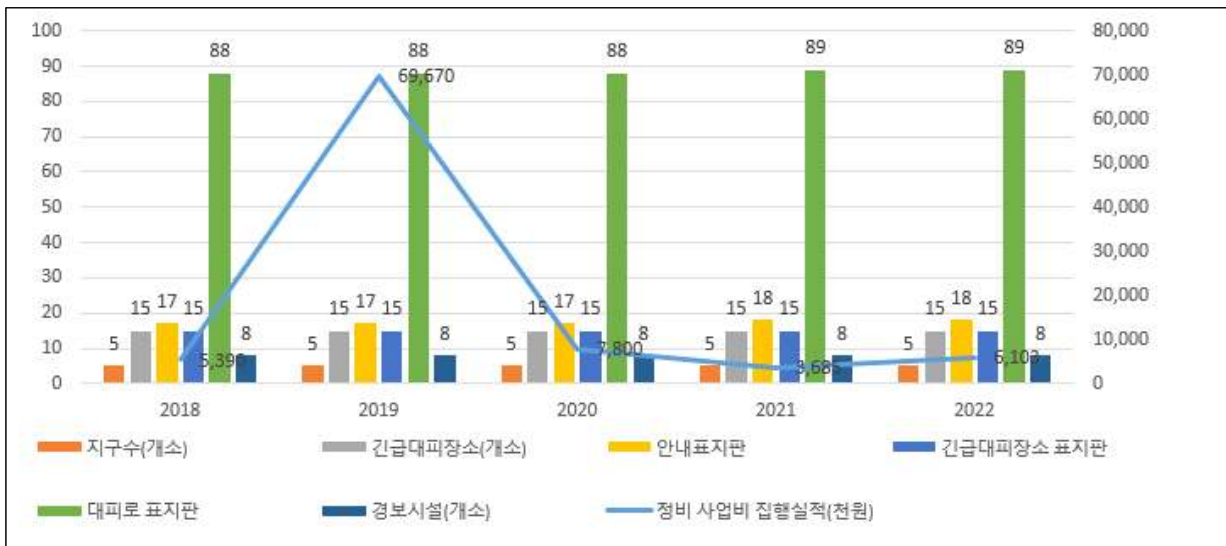
- 2022년 누락된 공공시설물 대상 추가로 인한 내진률 감소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지역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신명지구	지경IC 신명동278-3 (야산) 울산교육수련원	24	2	3	19	1
산하지구	시코어호텔	13	2	1	10	-
정자지구	컴온비치호텔 벽산아진APT 울산교육연수원 울산인성교육센터	35	5	4	26	4
구유지구	정자오피스텔 구유동 산64 (야산) 구유동 82-3 (야산)	22	3	3	16	-
당사지구	우가마을경로당 강동축구장 주차장 튠릭아트박물관 운동장 어물마을 야산	28	6	4	18	3
합 계		122	18	15	89	8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5,390	69,670	7,800	3,685	6,103
지구수(개소)		5	5	5	5	5
긴급대피장소(개소)		15	15	15	15	15
표 지 판	안내표지판	17	17	17	18	18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15	15	15	15	15
	대피로 표지판	88	88	88	89	89
경보시설(개소)		8	8	8	8	8



- 지진옥외 및 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명칭 변경 비용 집행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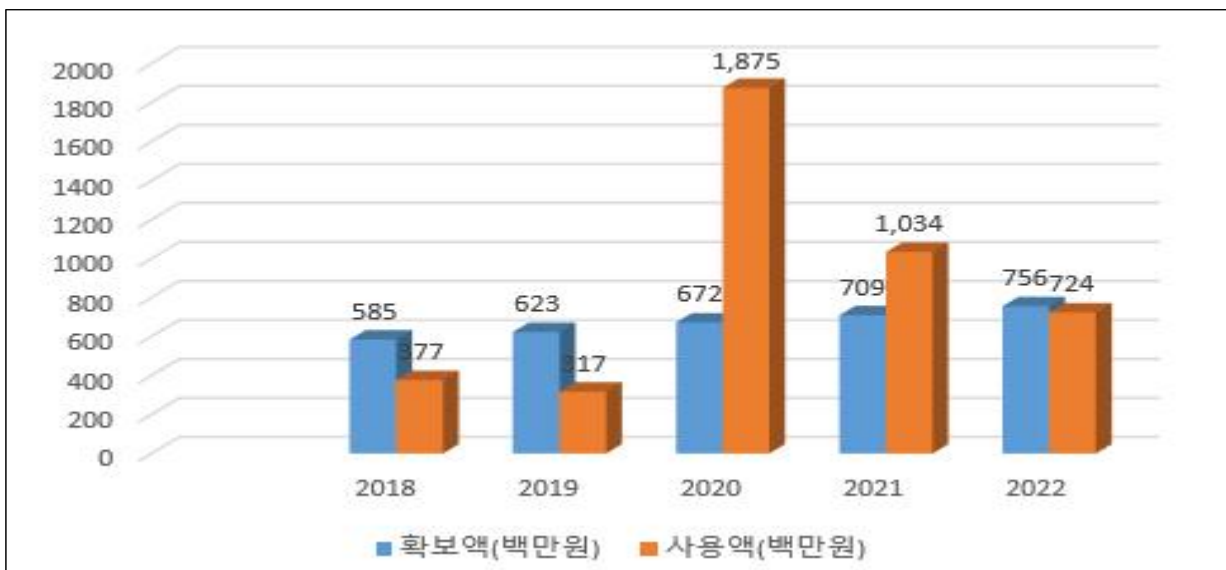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756백만원	756백만원	100%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6,589백만원	6,606백만원	100.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 (당해연도)		585	623	672	709	756
사 용 액	합 계	377	317	1,875	1,034	724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154	1,532	314	293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377	163	343	720	431



- 매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기준액 100% 확보하고 있으며, 태풍 호우 등 자연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울산광역시 복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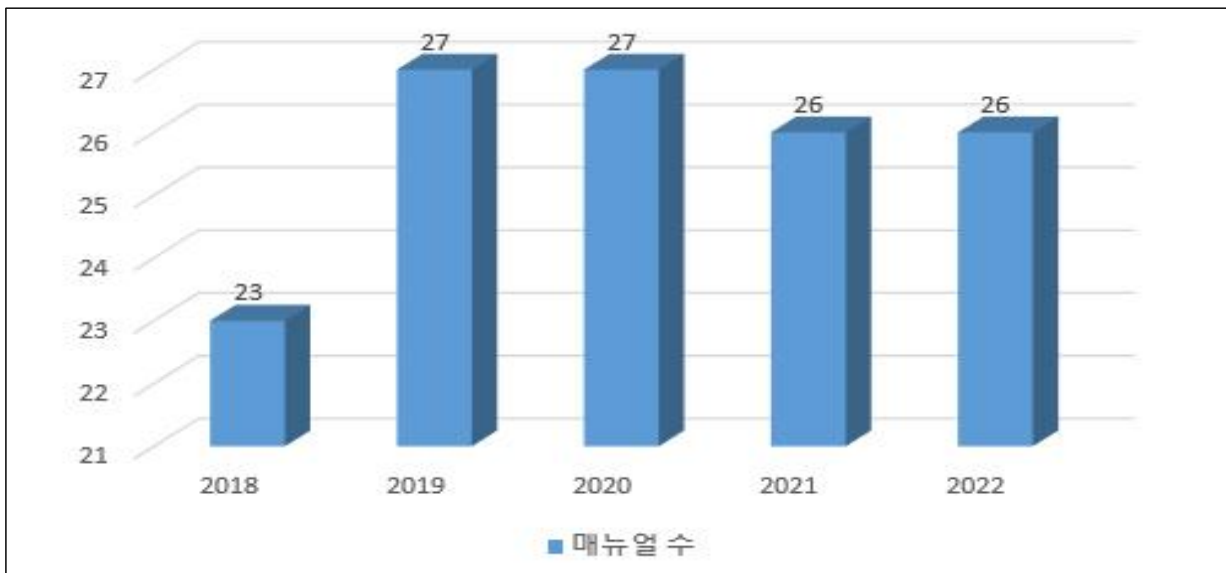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소관 과	개정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재난대응절차, 부서별 협업기능, 기관임무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22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22	
유해화학 물질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2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2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다중밀집건축물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축주택과	2022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2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창조경제과	2022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2	
육상화물 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행정과	2022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2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2	
저수지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2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외 25종	'22. 2. 1.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현행화	
풍수해 외 25종	'22. 7. 1.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현행화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뉴얼 수	23	27	27	26	26



- 전년도 대비 증가현황은 없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음.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A	A	A	A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등 급	1등급	해당없음	A등급	미실시	A등급

- 2020년 지역안전도는 개선작업으로 평가 등급이 1~10등급에서 A~E 등급으로 변경
- 2021년 자연재해 안전도 전국적 미실시하였으며, 복구는 2020년도에 이어 꾸준히 안전 등급(A)을 받고 있음.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더위 쉼터 지정현황]

명 칭	주 소	명 칭	주 소
원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2길 21	금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4-1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	남정자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황토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52
제내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32-1	장등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 59
수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43	구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80
동호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0길 5	화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길 34
수성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59	구남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구남1길 10-1
흙골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01	달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71
차일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47	대안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3길 42-6
시장2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12	신전(강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길 10
시장1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14-2	우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14
매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37-1	당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44-1
농소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26	북정자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60-1
농소1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중산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43	북구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오토밸리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농소2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8
화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6	무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25
이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5	명촌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7길 21
신천(냉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19	상연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상연암길 15-1
신기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25-4	두부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6길 5-1
약수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39-3	효문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416-31	삼통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1길 17-6
농소3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담로 77	상방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 37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명촌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천곡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	송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성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성혜1길 12-5	사청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길 15
가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672	화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18-2
천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44-1	곡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저수지길 72
시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길 32	송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3길 25
상안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2	화봉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9
동산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100-1	양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달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마을안길 3	양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39
강동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중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5길 3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성내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2길 9-1
주령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주령1길 148	신전(염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5길 7-3
제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6-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신명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1795-4	쇠부리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86
판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2길 9-3	호계문화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1로 18

[지진 옥외 대피장소 현황]

장 소 명	도 로 명 주 소	면적 (㎡)
농소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3(호계동)	2462
호계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0(호계동)	4342
온누리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90	20223
매곡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45(매곡동)	5280
매곡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59(매곡동)	4408
매산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53(매곡동)	6281
신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49-7(신천동)	4330
중산어린이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69	5443
속심이보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00-14	3160
메아리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갯안1길 8(중산동)	892
약수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50(중산동)	11065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32-46(중산동)	5100
이화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31(중산동)	4213
이화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4길 40(중산동)	4437
상안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5(상안동)	3096
농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13-8	4895
동천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54(천곡동)	7977
동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26(천곡동)	6122
상안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59(천곡동)	4495
천곡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38(천곡동)	3430
천곡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8(천곡동)	1898
달천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301(달천동)	21334
농소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7(달천동)	3037
달천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63-23(달천동)	11642
달천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1(달천동)	5900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정자동)	4022
울산인성교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9-6(정자동)	4719
튜릭아트박물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61(당사동)	2890
강동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2길 10(산하동)	2555
강동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4길 5(산하동)	1848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	14689
명촌근린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44(진장동)	20288
명촌둔치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6-13	10507
명촌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895-1	356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옥외)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진장동)	21973
진장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24(진장동)	2950
효문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61-44	15798
북구청임시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4-1	16441
무룡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30(연암동)	7530
연암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12(연암동)	4706
연암초등학교효문분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70-4	4843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6길 7(효문동)	4700

효정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2길 41(효문동)	8547
양정생활체육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2길 25(양정동)	26013
현대자동차문화회관주차장 및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5	14716
울산양정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양정동)	2947
효정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363(양정동)	16665
누리어린이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57-3	6248
한솔근린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9-1	10258
화봉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길 15(화봉동)	11422
화동저수지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7	1093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75(화봉동)	2840
화봉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7(화봉동)	2714
화봉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1길 2(화봉동)	6745
화봉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42(화봉동)	1909
영포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667(영포동)	2023
농소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중앙로 14(창평동)	44135
호계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9(호계동)	8223
동대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36(신천동)	2620
매곡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9(매곡동)	6935
상방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25(연암동)	12025
북구청광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2502
연암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4길 35(연암동)	3542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2길 28(화봉동)	3600

- 대피소 및 주요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담당자 : 배지연, 전화 : 052)241-78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개요

가. 신청자 : 동남해안해상풍력(주)

나. 목적 : 기상 측정용 라이다(LiDAR) 부이를 설치하여 주변 해역의 풍황, 풍속, 풍향 등을 장시간 관측하기 위함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동남해안 해상풍력(주)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4로 21, 502호(산하동)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항 인근 해역 (35°37'33.27"N, 129°29'23.34"E)	7,828.9	기상 측정용 라이다(LiDAR) 부이를 설치하여 주변 해역의 풍황, 풍속, 풍향 등을 장시간 관측하기 위함	기상 측정용 라이다 (LiDAR) 부이 설치 1식	허가일로 부터 36개월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3. 3. 31.(금) ~ 2022. 4. 19.(수)까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농수산과(연암동), FAX : 052-241-8059)

3.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74호

신청자		장소	면적 (㎡)	목적	설치하는 공작물	기간	비고
성명	주소						
동남해안 해상풍력(주)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4로 21, 502호(산하동)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항 인근 해역 (35°37'33.27"N, 129°29'23.34"E)	7,828.9	기상 측정용 라이다(LiDAR) 부이를 설치하여 주변 해역의 풍황, 풍속, 풍향 등을 장시간 관측하기 위함	기상 측정용 라이다 (LiDAR) 부이 설치 1식	허가일로 부터 36개월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475호

울산광역시 복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22. 12. 27.)되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임무 및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내용(안 제6조부터 제8조)

1)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및 선임

2)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라. 지원절차(안 제9조부터 제13조)

1) 지원신청 및 절차 안내

- 2)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 3) 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마. 지원의 관리 및 취소(안 제14조부터 제18조)

- 1) 자료의 제출, 보고
- 2)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 반환
- 3)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과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thoris19@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

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

임관 등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담당업무	_____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_____)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9호)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생략)